

건설협회 시·도회장 회의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9일 오후 5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제14차 시·도회장 회의

에 참석.

정부·기관 발주공사 임금체불 원천 차단

도급금 5,000만원 공기 30일 초과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의무화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임금 체불이 사라질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공공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공사다.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은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

이'와 같은 것으로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체계다.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돼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게 불가능하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임금 등을 허위 청구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처음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의 과징금, 두 번째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이 규정은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백진용기자